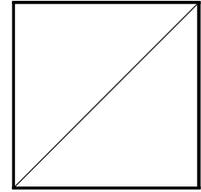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8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8. 25. (제 15 차)	

코로나 19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유예 요청  
관련 처리방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8. 25.

## 1. 의결주문

코로나 19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유예 요청 관련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API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체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1.12.3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비조치하고자 함

## 3. 의결내용

'21.12.3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그 밖에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가. 적용기간 : '21.8.4일~'21.12.31일

나. 적용대상 : 적용기간 중 발생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 위반행위

## 4. 참고사항

가. 비조치의견서 : 마이데이터업자 및 금융회사 등 시장 참여자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별지1>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금융감독원)

나. 관련 법규 : <별지2> 참조

## API 의무화 유예 관련 비조치의견서(안)

### 비조치의견서 ( 비조치 조치 기타 )

담당자	담당부서	디지털금융 감독국	담당자 (직위, 성명)	선임조사역 이재원	연락처	02-3145-7149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상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 대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API 및 통합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 6개월 내외의 API 의무화 유예가 필요					
판단	<input type="checkbox"/>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보제공자인 금융회사 등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표준API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1.8.4.~’21.12.31.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하는 것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IT개발인력 부족으로 금융회사 등의 전산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li> <li>○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있음</li> </ul>					
판단이유	<input type="checkbox"/>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 련 법 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8. 4.]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

**제6조(처리절차)** ⑨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안의 제의 등)**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4의2. 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디지털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2697	02-3145-7149